

「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6월 1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장동기)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정지원(안 제2조)
 -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가능
-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(안 제3조)
 -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
 - 군수는 재단의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며,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

○ 출연금의 지급(안 제4조)

- 재단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,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 지급

○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
-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○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
- 안 제3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
-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
-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.
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부.

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한국지역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3조(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)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.

제4조(출연금의 지급)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

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
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
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

제5조(결산서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
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
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에 지원하였거나 지원
중인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